

식 생 활 교 육 지 원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2021. 10.

농 립 축 산 식 품 부
(식생활소비진흥과)

1. 제안이유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21.12.16 시행)에 따라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 평가 결과에 대한 공표 방법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 평가 결과에 대한 공표 방법 규정(안 제3조 제4항 신설)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등 합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불임(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의 평가)”를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의 평가 등)”으로 한다.

제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의 평가 결과를 평가가 완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보, 공보,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의 평가) ① ~ ③ (생략) ＜신설＞	제3조(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의 평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의 평가 결과를 평가가 완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보, 공보,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진흥과	
연 락 처	(044) 201-2272, 2273